㈜영원무역홀딩스 지속가능경영위원회 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지속가능경영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의안을 심의 또는 의결한다.

1. 지속가능경영 중장기 경영전략 수립
2. 지속가능경영활동 진행 사항에 대한 보고
3. 회사의 주요 리스크 요인 검토 및 지속 관리
4. 기타 위원장 및 각 위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2장 구 성

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사외이사 1인 이상, 사내이사 1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은 이사회에서 선임하고 해임한다.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정한 이사로 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회의 시 의장이 된다.

③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회에서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회 의

제5조(소집) ① 위원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소집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시,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제6조(소집절차)

① 위원회의 소집은 회의일 전일까지 개최시기 및 장소를 위원 및 참석대상자에게 통보한다.

② 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통지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제7조(결의방법) ① 위원회의 결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로 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위원이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으로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위원은 위원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8조(관계인의 의견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회의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9조(의사록)

① 위원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 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10조(규정의 개폐)

이 규정의 개폐는 이사회 결의에 의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1년 03월 16일부터 시행한다.